

2019. 11. 24



가
Korea Law Service Center

- 1.
- 2.
- 3.
- 4.
- 5.
- 6.

가

가

1. 「 」 28 1

2.

3. CM

4.

가

5.

6.

가

가가 「 」

7.

가

8.

9.

10.

가가 가

11.

가

가

12.

가

13.

가

14.

15.

가

16.

가

17.

가

18.

19.

가

20.

가

가

21.

22.

가

23.

24.

가

가

25.

()가

26.

27.

28. 2

가

29.

30.

31. 가

32. 建築士 總收入金額

33. 設計用役代價

貸損金

- 34.
- 35. 建築士協會 登錄入會費 必要經費
- 36. 設計用役代價 總收入金額計算
- 37.
- 38.
- 39.
- 40.
- 41.
- 42. 가 가
- 43.

- 1.
- 2.
- 3.
- 4.
- 5.
- 6.

가

가



[2019. 11. 1.] [16415 , 2019. 4. 30.,]

() 044 - 201 - 3776

1 < 2011.5.30 >

1 ()

[2011.5.30]

2 () . < 2013.3.23, 2015.8.11 >

1. " " (工事監理) 19

2. " " 23 19

가. 13

. 「 가 」 , , , , , , . (技士)

. 4

가

3. " " (大修繕), (工作物) (築造)

가.

[" "(設計圖書)]

4. " " () 「 」

5. " (建築士業) 19
(業)

[2011.5.30]

3 <1977.12.31>

4 () 「 」 23 1

23 1 9 4

가 . < 2018.12.18>

「 」 25 1

23 1 9 4

가 . < 2018.12.18>

[2011.5.30]

5 <2011.5.30>

2 < 2011.5.30>

6 <1977.12.31>

7 () 가 14

가

. < 2013.3.23>

[2011.5.30]

8 () 14

. < 2011.5.30, 2013.3.23>

<1977.12.31>

<2015.8.11>

<1995.1.5>

[2011.5.30]

9 ()

< 2015.8.11>

1.

2. 「 」

3

3. 2

4. (1)

2

[2011.5.30]

10 ()

19 (" ")

[2011.5.30]

11 () 가

. < 2011.5.30, 2013.3.23 >

1.

2. 9 1 3

3. 10

4. 28

5. 28

6. 「 」 23 25

가 「 」 28

[(損潰):]

<1995.1.5>

1 15

. < 2011.5.30, 2013.3.23 >

[1977.12.31]

[2011.5.30]

12 () 가

[2011.5.30]

3 < 2011.5.30 >

13 ()

3

5

. < 2013.3.23 >

1

. <

2013.3.23 >

1. 5

(「 」 32

가

「 」 11 2

)

8

2. 1

3. 1 2

1

. < 2013.3.23 >

, 가 ,

[2011.5.30]

14 ()

1

. < 2013.3.23 >

13 1

[2011.5.30]

15 () 1 가

. < 2001.8.14, 2005.7.13 >

1.

「

」

2.

2

가

3. 3

.

4

가

4. <2001.8.14 >

. < 1996.12.30, 2008.2.29, 2013.3.23 >

[1995.1.5]

15 2()

3

. < 2013.3.23 >

[2011.5.30]

16 () , ,

[2011.5.30]

16 2 <2011.5.30 >

17 ()

. < 2013.3.23, 2018.12.18 >

1. 7 2

2. 13 3

3. 14

4. 18

5. 23 1

6. 23 5

7. 23 9

[2011.5.30]

3 2 < 2011.5.30 >

18 () 14

. < 2013.3.23 >

1

1

. < 2013.3.23 >

3

1 3

1 5 , ,

[2011.5.30]

18 2() 18

. < 2013.3.23, 2018.4.17 >

- 1. 11 1
- 2. 18 3 (9 1) 2
- 3. 30 2
- 4. 30 3 2 2 가

1

. < 2013.3.23 >

[2011.5.30]

18 3() 18 가

. < 2013.3.23 >

- 1. 11 1
- 2. 30 3 2 1
- 3.

<2015.8.11 >

1 2 18

[2011.5.30]

4 < 2011.5.30 >

19 ()

1 . < 2017.12.26 >

- 1. (鑑定)
- 2. 「 」 27 ,
- 3. 「 」 35 . 「 」 2 8

4. 「 」 75

5. 「 」 「 」

6. 「 」 23

7. 「 」 2 1 12 가 가· 가·

8.

[2011.5.30]

19 2() · 가

. <

2013.3.23 >

가

() . <

2013.3.23 >

1 2 ·

. < 2013.3.23 >

[2011.5.30]

19 3(가)

3

가

. <

2017.12.26 >

1. 가

2.

3. 「 」

4.

1

1

3

가

. < 2017.12.26 >

1

가

. < 2013.3.23,

2017.12.26 >

[2011.5.30]

[2017.12.26]

20 () , 「 」

가

2
19 3 1

가
가

3

「 」

[2011.5.30]

21 ()

“ ”)

가

(

(署名捺印)

[2011.5.30]

22 <2000.1.28>

22 2()

. < 2013.3.23 >

1. 11

2. 18 3

3. 28

4. 30 3 2 2

1

[2011.5.30]

5

< 2011.5.30 >

23 () 18

가

(”

") . < 2011.5.30, 2013.3.23 >
1 5

. < 2018.12.18 >
2

. < 2018.12.18 >

) , (" " (13

.) . 18
, 가

. < 2011.5.30, 2018.12.18 >

가

• (受任)

가

. < 2011.5.30, 2013.3.23, 2018.12.18 >

" " . < 2011.5.30, 2018.12.18 >

1

1 . < 2011.5.30, 2018.12.18 >

. < 2011.5.30, 2018.12.18 >

2 4

. < 2011.5.30, 2013.3.23, 2013.5.22, 2018.12.18, 2019.4.30 >

1. 「 」 26 가

39 2

2. 「 」 21 1

3. 가, , 「 」 「

」

가

4. 「 」 2 7 가
(「 」 2 3)

9 4 가
. < 2011.5.30, 2018.12.18, 2019.4.30 >

[1995.1.5]
[2011.5.30]

23 2 <1995.1.5 >

24 ()

23 9 . < 2018.12.18 >

1. 18 2 1

2. 28 1

2

3. 28 1

4. 「 」 1

5.

6.

[2011.5.30]

25 <1995.1.5 >

26 <1999.2.5 >

27 (.) 가

， ，

. <

2013.3.23 >

[2011.5.30]

28 ()

가

1

. , 1 ,

2 , 4 5

. < 2013.3.23, 2018.12.18 >

1.

- 2. 18 3
- 3. 19
- 4.
- 5. 2
- 6. 23 7
- 7. 27
- 8. 30 1

1

1

1

<

2013.3.23>

1

2

[2011.5.30]

28 2()

. < 2013.3.23>

- 1. 11
- 2. 18 3
- 3. 28

[2011.5.30]

29 ()

< 2013.3.23, 2015.8.11 >

- 1. 28
- 2. 27
- 3. 가

[2011.5.30]

30 (.)

. < 2013.3.23>

1

[2011.5.30]

30 2()

18 5

. < 2013.3.23 >

가 18

. <

2013.3.23 >

1. 18 5

2. 18 3 3

3. 18 1 3

[2011.5.30]

5 2 < 2011.5.30 >

30 3() 가

30 4 2

, 1 9 2 1

< 2013.3.23, 2018.12.18 >

1. 18

2. 18 2

3. 19

4. 19 2 1

5. 20 1

6. 20 6

7. 20 7

8. 23 7

9. 2 2 가

1.

2. 2

3.

. (" . "), 31

(" ") 가 1

가

. < 2013.3.23 >

<2015.8.11>

1 . , 가

3 . < 2013.3.23>

[2011.5.30]

30 4() (" ")

. < 2013.3.23>

1 9 .

」 2 가

. < 2013.3.23>

1 3 .

[2011.5.30]

6 < 2011.5.30>

31 () , , .

[2011.5.30]

31 2() 31

- 1. .
- 2.
- 3. .
- 4.
- 5.
- 6.
- 7.

[2015.8.11]

32 ()
(支部)

[2011.5.30]

33 <2011.5.30>

34 <2011.5.30>

35 ()

가 . <

2013.3.23>

[2011.5.30]

36 (「 」)

「 」

[2011.5.30]

37 <2001.8.14>

38 (가) 18

10 1 , 10 2 1

3 2

가 . < 2013.3.23>

1 가

. < 2013.3.23>

가

[2011.5.30]

38 2()

. < 2008.2.29, 2013.3.23>

[2001.8.14]

6 2 < 2015.8.11>

38 3()

가 (" ")

가

[2015.8.11]

[38 3 38 11 <2015.8.11>]

38 4(가) 5

20

가

1

가

[2015.8.11]

[38 4 38 12 <2015.8.11>]

38 5()

1.

2.

3.

4.

5.

6.

7.

8. 1 7

[2015.8.11]

38 6() 38 5 1

1

[2015.8.11]

38 7() 38 5 3

1

[2015.8.11]

38 8()

38 5 3
가 1

38 5 1

38 5 3

[2015.8.11]

38 9()

가

1 가 가

2

[2015.8.11]

38 10()

「 」

「 」

[2015.8.11]

6 3 < 2015.8.11 >

38 11()

. < 2013.3.23 >

. < 2013.3.23, 2015.8.11 >

- 1.
2. 7 2
3. 14
4. 18 ,
5. 19 2
6. 30 2

30 3

. < 2013.3.23 >

30

가

. <

2013.3.23>

4

[2011.5.30]

[38 3 <2015.8.11>]

38 12() 「 」 127

129 132 . < 2015.8.11 >

1. 38 11 2

2.

[2011.5.30]

[38 4 <2015.8.11>]

7 < 2011.5.30 >

39 ()

, 2 2 .

1.

2. 3

[2015.1.6]

[39 39 2 <2015.1.6>]

39 2()

1 1

1.

18

2. 4

3. 10 18 4

4. 18 2

18 3

5. 20 6

6.

7. 23

8. 30 3 2 2 가

9. <2015.1.6>
[2011.5.30]
[39 <2015.1.6>]

39 3(.) 39 2 3 3 가
가 .

[2017.12.26]

40 () , ,
39 39 2 (科) . , 가

. < 2015.1.6>

[2011.5.30]
[42 <2011.5.30>]

41 () 100

1. 12

2. 30 1 .

50 .

1. <2015.8.11>

2. 11 3

3. 27

4. <2015.8.11>

1 2 . . < 2013.3.23>

[2011.5.30]

42

[42 40 <2011.5.30>]

43 <1984.12.31>

< 1536 ,1963. 12. 16.>

1 ()

2 ()

가

7

1

1

2

16

3 ()

1

1

4 ()

2

1

5 ()

가

26

가

가

가

가

가

가

< 3074 ,1977. 12. 31.>

()

6

()

1

()

2

"2級建築士"

)

4

3

1,500

< 1980.1.4 >

()

2

8

10

12

19

42

()

1

2

< 3242 ,1980. 1. 4.>

() 1980 4 1 .
(2) 2 16

()

< 3559 ,1982. 4. 3.>

1982 7 1 .

< 3767 ,1984. 12. 31.>

() 1985 1 1 .
()
6

() 2 가
2

()

() 11 28

< 4116 ,1989. 4. 1.>

< 4381 ,1991. 5. 31.>

1 () 1 .

2 6

7 ()

2 3 " 2 21 " " 2 14 " .
 4 2 " 6 2 " " 21 1 " .

< 4501 ,1992. 11. 25.>

1 () 6
 2 7
 8 ()

25 2

4 1

가

, , , , , , , , ,

. . . .
 1 가

< 4918 ,1995. 1. 5.>

1 () 1995 7 1 . , 7 . 13 . 14 .
 15 23 3 1996 1 1 .
 2 ()

3 () 2000 12 31
 1 14

1.

5

가

2.

7

가

3.

3

10

가

4. 14 가
4 () 가 .

5 ()
. , 1995 12 31
1995 12 31 23 7

6 ()

< 5238 ,1996. 12. 30.>

< 5453 ,1997. 12. 13.>

1 () 1998 1 1 . < >
2

< 5454 ,1997. 12. 13.>

1998 1 1 . < >

< 5735 ,1999. 1. 29.>

< 5815 ,1999. 2. 5.>

() , 1 7 2000 1 1
, 5 5 3 2001 1 1 .
()

< 6244 ,2000. 1. 28.>

() 3 . , 22 31 1
 33 1 가 2001 1
 1 .
 ()
 ()
 ()
 ()
 ()
 ()

< 6503 ,2001. 8. 14.>

() . , 15 1 4 2010 1
 1 , 17 5 2002 1 1 .
 () 1 14
 2009 12 31 .
 1. 가
 2. 가
 5
 3. 가
 7

< 7593 ,2005. 7. 13.>

()
 () 15 1 1

< 8784 ,2007. 12. 21.>

()
() 「 」 13
14 .

< 8852 ,2008. 2. 29.>

1 () . , . . . < > . . . , 6

2 5

6 () <554>

<555>

2 1 . 2 , 5 , 8 1 , 11 1 . 3 , 13
2 , 15 2 , 15 2, 22 2 1 , 23 1 , 27 1 , 28
1 . 2 . 3 , 28 2 , 29
, 30 1 , 30 2 1 . 2 , 31 2 2 , 34 4 ,
35 2 , 38 1 . 2 41 3 5 " "
" " .
2 3 , 8 1 , 15 2 23 8 2 4 "
" " " .
7 2 , 17 , 19 2 3 23 3 . 8
" " " " . 7 2 , 17
, 19 2 1 . 2 . 4 , 19 3, 23 3 . 8
38 2 " " " " .
16 2 1 " " " " .

<556> <760>

7

< 8974 ,2008. 3. 21.>

1 () . < >
2 12
13 ()

4 1 " 19 1 " " 「 」 23 1 " , 2
 " 21 1 " " 25 1 " .
 11 1 6 " 19 21 " " 「 」 23 25 "
 .
 23 1 " 19 21 " " 「 」 23 25 " .
 <70>

14

< 9187 ,2008. 12. 26.>
 3 .

< 10250 ,2010. 4. 12.>

1 () 6 .
 2 7
 8 ()
 .
 23 8 2 " 4 1
 " " 「 」 21 1
 " .

9

< 10392 ,2010. 7. 23.>

() 6 .
 (가) 20 3 .

< 10719 ,2011. 5. 24.>

1 () 6 . < >
 2 5
 6 ()

23 8 4 " 2 5 " " 「 」
2 7 " .

< 10756 ,2011. 5. 30.>

1 () 1 . , 12 , 33 , 34 ,
40 5 2 , 15

2020 1 1 .

2 () 13 2

1

13

3 () 2019 12 31

15

5 (13 2 1 5

4)

2026

12 31

14

1

16

1

15

2

4 () 2 2 2019 12

31 15 2019 12 31

7 2

5 () 2019 12 31

1. : 13

2. : 15 2

3. , , : 16

4. : 17

5. :

39

15 2019 12

31

1.

」

2. 「 가 」

3. 「 가 」

3

4. 「 가 」

5

6 ()

18 1

1 18

1

30 2

7 ()

23

8 ()

< 11690 ,2013. 3. 23.>

1 ()

2 5

6 () <545>

<546>

2 1 , 2 , 7 2 , 8 1 , 11 1

, 3 , 13 1 , 2 1 , 3 , 14

2 , 15 2 , 15 2, 17 , 18 1 • 3 , 18 2

1 , 2 , 18 3 1 , 2 ,

19 2 1 • 2 , 19 3 2 , 22 2 1 , 23

1 , 3 , 8 , 27 , 28 1

, 2 , 28 2 , 29 , 30

1 , 30 2 1 , 2 , 30 3 1

, 3 • 4 , 5 , 30 4 3 , 31 2 2 ,

4 6 , 35 2 , 38 1 • 2 , 38 2, 38 3 1 ,
 2 , 3 , 4 • 41 3
 " " " " .
 2 3 , 7 2 , 8 1 , 13 3 , 15 2 , 17
 , 18 3 , 19 2 3 , 23 3 , 8
 2 • 4 " " " " .
 13 2 1 " " " " .
 19 3 2 " " " " .
 30 4 1 3 " " " " .
 <547> <710>
 7

< 11794 ,2013. 5. 22.>

1 () 1 .
 2 24
 25 ()
 23 8 1 .
 1. 「 」 26 가
 39 2
 <25>
 26

< 12969 ,2015. 1. 6.>

< 13472 ,2015. 8. 11.>

1 () 6 . , 8 3 , 9
 1 4 , 18 3 2 , 29 2 , 30 3 4 , 38 11 2 4 ,
 38 12 1 , 41 2 1 4 .
 2 () 9 1
 10429 2

3 (가)

38 3 1

6 38 4 1

가 가

1
38 3 1

가

38 3 1

38 3 1

38 3 1

4 () 41 2 1 4

< 15308 ,2017. 12. 26.>

1 ()

2 (가) 19 3 1

< 15595 ,2018. 4. 17.>

< 15993 ,2018. 12. 18.>

1 () 1

2 () 23 2 3

< 16414 ,2019. 4. 30.>

1 () 6

2 ()
23 9 1 " " " .

3

< 16415 ,2019. 4. 30.>
1 () 6 . < >

2 ()
23 9 4 10 " " " " .

3



[2019. 9. 10.] [30075 , 2019. 9. 10.,]

() 044 - 201 - 3776

1 () 「 」

[2012.5.30]

2 <1995.12.30>

2 2() 「 」 (" ") 2 2 " "

[2012.5.30]

2 3() 2 2 " 가 " . 2 3

1. 「 」

2. 「 」

2 (3 1

) 가

3. 3 「 .

」 4

가

1 2 3 1 .

[2016.2.11]

3 <1995.12.30>

4 <2000.5.10>

5 () 14

9

. < 2013.3.23>

1

. <

2013.3.23>

1

. < 2013.3.23>

2

. <

2013.3.23>

[2012.5.30]

6 <2016.2.11>

6 2() 11 1 6 " "

「 」 2 17 (耐力壁)・

・ ・ ・ (, , , ,) . <

2014.11.11>

[2012.5.30]

6 3() 13 1 "

" 23

13 (" ") 3 . ,

6 4 2 1 2 4

(" ") 28 2

2

13 1

[2012.5.30]

[6 3 6 8 <2012.5.30>]

6 4() 13 2 2 " "

13 2 1

(" ") ()

1. 「 」 2 : 2

2. 「 」 2 : 4

13 2 3 " " . , 1 2 2023 12 31 . < 2013.3.23 >

1. 「 」 2 1 (13 2 1) 5 , 8

2. 가. 57 (2) . 96 (4) . 48 (120) , 2)

3. 13 2 1

[2012.5.30]

6 5() 가 1 2 . < 2016.2.11 >

[2012.5.30]

6 6() 6 3 1 (" ") (23 2) . 1 가 18 . <

2013.3.23 >

(" ") ,

[2012.5.30]

6 7() 가 1 .

2013.3.23>

2 . < 2013.3.23> 3 가 6 3 .

2 가 . < 2013.3.23> 3 4 .

. < 2013.3.23> [2012.5.30]

6 8() 14 1

. < 2013.3.23> 11

. < 2013.3.23>

1. 6 7 4

2. (13 1)

3. (13 1

)

4. 「가 」 15 1 2 (가)

2 가 「 」 36 1 「 」 88

. , 가 . < 2018.9.28>

[2012.5.30]

[6 3 <2012.5.30>]

7 () 14 2

. , 90 「 」 9 1

. < 2013.3.23 >

[2012.5.30]

[11 , 7 8 < 2012.5.30 >]

7 2 <2012.5.30 >

8 () 14 3

5

9 1

1

. < 2013.3.23 >

[2012.5.30]

[7 , 8 9 < 2012.5.30 >]

9 () 16

< 2012.5.30 >

1.

2. 1

3. 2

<1989.7.5 >

1

. < 2012.5.30, 2013.3.23 >

[1979.11.5]

[2012.5.30]

[8 , 9 10 < 2012.5.30 >]

10 () 16

[2012.5.30]

[9 , 10 11 < 2012.5.30 >]

11 () 100

60 , 60

5 60

< 2016.2.11 >

[2012.5.30]

[10 , 11 7 < 2012.5.30 >]

12 <2012.5.30 >

13 <2012.5.30 >

- 14 <2012.5.30>
- 15 <2000.5.10>
- 16 <2012.5.30>
- 17 <2012.5.30>
- 18 <2012.5.30>
- 19 <2012.5.30>

20 () 18 1

. < 2013.3.23 >

1.

2.

3. 30 2 (30 2 2

)

18 1

18 5 5

18 5

30 1

. <

2013.3.23 >

1

3

18 2 1 ,

. < 2013.3.23 >

[2012.5.30]

21 (가) 20 3 가 ,

가 가 .

1. 가 :

2. 가 :

3. 가 :

가

1 2

가 , 가

. < 2013.3.23 >

[2012.5.30]

21 2() <2002.3.18>

가 23 3 .

. < 2012.5.30>

가 23 3 .

. < 2012.5.30>

[1995.9.2]

[2012.5.30]

22 () 23 1 (" (") (

) ()

. 「 」 36 1

()

. < 2013.3.23>

1.

2.

[2012.5.30]

23 () 가

. , 가 20 가

19

. < 2013.3.23>

[2012.5.30]

24 () 22

24 가

, . < 2013.3.23>

1

. < 2013.3.23>

[2012.5.30]

25 () 23 8 3 "

" . < 2019.4.2>

1. 가

2.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012.5.30]

26 <1995.9.2>

27 <2000.5.10>

28 <2000.5.10>

29 () 27 " "

27

가 30

. < 2013.3.23, 2016.2.11 >

[2012.5.30]

29 2() 28 1

(23 8 , ") 2

()

2 .

[2012.5.30]

29 3() 29 3 " . < 2016.2.11 >
가 " . < 2016.2.11 >

1.

2. 11

3. 18 3

[2012.5.30]

30 () 30 2 1 가 18 5

40

. < 2016.2.11 >

30 2 2

가 18

. < 2016.2.11 >

1. 18 5 :

1

2. 18 3

3

: 8

3. 18 1

3

: 8

1 2

. < 2013.3.23 >

1 2

,

. < 2013.3.23 >

[2012.5.30]

30 2() 30 4 ("

")

. < 2013.3.23 >

1. 2

2. 2

3. 「 」 2

가

(職

)

2

4. 「 」 2 (2

3

가

) 2

1 1

2

,

1

. < 2013.3.23 >

[2012.5.30]

30 3() (" ")

30 3 5
. < 2013.3.23 >

. < 2013.3.23 >

[2012.5.30]

30 4(,)

1. (" ")

2. .

3. 가 가

3

4. 가 가

가 (疎明) 가

2

1 2

[2012.5.30]

30 5()

. < 2013.3.23 >

1.

2. , ,

3.

4. 30 4 1

[2012.5.30]

30 6() 30 3 5

7 . < 2013.3.23 >
30 3 3 . (" .
") 31 (" ")가

.
7 . < 2013.3.23 >

[2012.5.30]

30 7() 30 3 5
60 가
60 . < 2013.3.23 >

[2012.5.30]

30 8(.) 30 6 3

[2012.5.30]

30 9() 3 2
,
가 가
가 .

[2012.5.30]

30 10() , .
. < 2013.3.23 >

[2012.5.30]

31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2012.5.30]
- 32
- 33
- 34
- [34 38 <2012.5.30>]
- 34 2() 38 3 1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2016.2.11]

가

.

[2012.5.30]

<1995.9.2>

<2000.5.10>

[34 38 <2012.5.30>]

34 2() 38 3 1 (" "

1 (座)

가 .

[2016.2.11]

34 3() 38 4 1 가

1.

2.

3.

4.

5. 가

6.

7. 1

8.

9.

10. ()

11.

12.

13.

1 3

. , 1 6

[2016.2.11]

34 4()

1

[2016.2.11]

34 5()

19

38 5 1

1. : 가 가

2. :

3. :

4. :

5. : 1

4

6. 가

가 ,

[2016.2.11]

34 6()

40

1

「 가 」

가

가

3

[2016.2.11]

34 7() 38 8 2

가

38 8 2

[2016.2.11]

35 ()

38 11 1 3

. < 2013.3.23, 2016.2.11 >

1. <2016.2.11 >

2. 22 2 1

3. 23 1

4. 27

5. 28

(

)

6. 28 2 3

7. 29

8. 30

9. 30 3

10. 41 (11 3)
38 11 2

. < 2013.3.23, 2016.2.11 >

1. 7 2

2. 13 3 6 7

3. 14

4. 18 , 18 3 2 30 3 4 ,

5. 19 2

6. 30 2

. < 2013.3.23 >

. 가 1

. < 2013.3.23 >

[2012.5.30]

35 2(.) 38 11 3 35 1 9

(" . ") (" . ")

. < 2016.2.11 >

. 30 2 30 10

" " " " " , " " . " ,
" " " . " . < 2013.3.23 >

1 2 가 .
「 」 4 .

30 2

30 4 30 10

[2012.5.30]

35 3() 38 11 4

. < 2013.3.23, 2016.2.11 >

38 11 4

. < 2013.3.23, 2016.2.11 >

[2012.5.30]

36 () 35 2 6

(

) . < 2013.3.23 >

[2012.5.30]

37 () (38 11

)

가
가

「 」 19

. < 2016.2.11, 2017.3.27 >

1. 7 2

2. 8 1 9

3. 13 3

3 2. 14

4. 23 1 8

24

5. 23 3 가

6. 3074 5

38 5 1 3

가 「 」 19 1 4

가 . < 2016.2.11 >

[2014.8.6]

38 () 41 1 2 3

[2009.5.13]

[34 <2012.5.30 >]

< 9183 ,1978. 10. 6.>

()

() 3074 5

. < 1979.11.5, 1981.6.24 >

()

4 2

. < 1979.11.5, 1981.6.24 >

() 3074

5

22

23 1 3

6

()

4

< 9652 ,1979. 11. 5.>

()

<1980.5.26>

< 9878 ,1980. 5. 26.>

()

, 25 1

1980 10 1

(2)

3242

2

2 5

. < 1989.7.5,

1995.9.2 >

1.

2.

()

23 2

< 10370 ,1981. 6. 24.>

< 10867 ,1982. 7. 14.>

. , 25 2 1983 1 1

< 11706 ,1985. 6. 15.>

() . , 8 1 1988 1 1

() 1980 12 31

6 2 1986 6

30 .

()

2 2

2 4 " " . ,

. .

< 12692 ,1989. 5. 1.>

1 () 3 . []

2

3 ()

3 3 " " "

" .

4 5

< 12751 ,1989. 7. 5.>

. , 14 1 1990 1 1

< 14447 ,1994. 12. 23.>

1 () .< >

2 4

5 () <87>

<88>

3 1 5 , 4 1 3 , 5 1 3 , 6 1 .
 2 . 6 2 1 . 2 . 9 1 , 11 , 14 3 , 15 , 22 , 24
 1 , 25 3 . 5 , 28 , 29 1 . 2 , 30 1 . 3 , 33 ,
 34 2 . 3 , 35 1 3 36 " " "
 " , 14 2 " " " " , 5 ,
 13 18 2 " " " " , 3 1 . 6 , 4
 1 . 3 , 5 4 , 6 1 , 8 3 , 12 , 21 1 . 2 , 22 ,
 24 2 , 25 3 5 , 27 36 " " "
 " .

<89> <205>

< 14759 ,1995. 9. 2.>

15 21 2 1996 1 1 .
 . , 4 . 5 . 7 . 7 2 . 8 13 .

< 14891 ,1995. 12. 30.>

1 () 1996 1 6 .< >

2 3

4 () .

2 3 .

[1] .

< 15598 ,1997. 12. 31.>

1998 1 1 .

< 16808 ,2000. 5. 10.>

() . , 7 8 10 , 21
 35 2 2001 1 1 .

() 1

()

13

2000 6 30

< 17545 ,2002. 3. 18.>

< 18312 ,2004. 3. 17.>

< 18952 ,2005. 7. 18.>

< 19507 ,2006. 6. 12.>

< 19513 ,2006. 6. 12.>

1 () 2006 7 1

2 3

4 ()

14 2 " 1 " "

"

<241>

< 20120 ,2007. 6. 28.>

2007 7 4

< 20722 ,2008. 2. 29.>

1 () . , 6

2 5

6 ()

5 1 • 2 • 3 , 6 2 , 6 3 1 • 2 , 7
 2 1 , 7 2 2 , 11 , 13 5 , 14 2 • 3 ,
 20 , 22 , 24 1 , 29 2 , 30 1 • 3 ,
 34 2 • 3 , 35 1 • 2 • 3 • 4 ,
 36 " " " " .
 5 2 , 6 3 1 , 7 2 1 , 8 3 , 12 , 22
 , 24 2 , 29 2 , 36 " " " " .
 5 2 , 13 , 14 2 , 18 2 " "

<138>

< 21098 ,2008. 10. 29.>

1 () . < >

2 3

4 ()

1 2 6 " 「 」 21 5 " " 「
 」 25 5 " , " 「 」 23
 " " 「 」 27 " .
 1 2 9 가 " 「 」 21 2 3
 " " 「 」 25 2 3 " , " 「 」
 21 7 " " 「 」 25 7 " ,
 " 「 」 23 " " 「 」 27 " ,
 " 「 」 24 " " 「 」 28 " ,
 " 「 」 30 31 " " 「 」 40
 41 " , " 「 」 33 37
 " " 「 」 44 47 " , " 「

「 」 38 " " 「 」 48 " ,
 " 「 」 39 41 43 " " 「 」 49
 52 " , " 「 」 44 , 47
 49 , 50 2, 51 , 53 55 67
 " " 「 」 43 , 53 , 55 57 59 62
 " .
 <38>

< 21214 ,2008. 12. 31.>

1 () . < >
 2 4
 5 () <150>
 <151>
 5 4 " " " " .
 <152> <175>

< 21489 ,2009. 5. 13.>

1 () .
 2 () 1
 .
 1 .

< 21590 ,2009. 6. 30.>

1 () 2009 7 1 . , 8 9
 2010 1 1 .
 2 (「 」) 「 」 2 46
 2011 6 30 가 .
 「 」 2 46 가(가
 가 가 가가 가
 가) (가
 .) , 2011 6 30 가

3 (「 」) 「 」 32 1
15

4 (「 」) 「 」
40 2
「 」 40 2
가

5 (「 」) 「 」 13 1
2 「 」 13 1

6 (「 」)

7 (「 」)

「 」 9 5
1

8 (「 」)

9 (「 」) 「 」 38 2
2 가 가
5
「 」 38 2 2

< 21626 ,2009. 7. 7.>

< 21668 ,2009. 8. 5.>

1 () 2009 8 7 . < >

2

3 ()

6 2 " 「 」 5 4 3 " " 「 」 5 4 4
"

< 22151 ,2010. 5. 4.>

- 1 () 2010 5 5 .
- 2 3
- 4 ()

6 3 3 22 " 「 」 21
 1 " " 「 」 36 1 " .

<192>

< 22467 ,2010. 11. 2.>

.

< 22628 ,2011. 1. 17.>

2011 1 24 .

< 23535 ,2012. 1. 25.>

- 1 () 2012 1 26 .
- 2 ()

25 3 .
 3. 「 」

<28>

3

< 23821 ,2012. 5. 30.>

- 1 () 2012 5 31 .
- 2 () 7 2013 1 1
- 3 () (10756)
) 2 1 " " 6 4 2 1
 2 .

4 () (10756

) 2 2 "

" 12 1 3

2 ("

") 4 . , 3

12 1 3

3 .

3 12

1 3 80

. 3 4

(3)

3)

3 3

가 4 (3

3)

5 () (

10756) 3 1

14 7 11

6 () 6 6 2 (

10756) 6 1

1 가 .

7 () 2019 12 31

1. : 7 2

2. : 8

3. : 9

4. : 10

5. : 11

6. : 12

7. 1 6
 : 6 3
 8. : 35
 8 () 2026 12 31

1. : 13
2. : 14
3. : 16
4. : 17
5. : 18
6. : 19
7. : 20

< 24443 ,2013. 3. 23.>

1 () . < >
 2 5
 6 ()

5 1 3 , 6 2 , 6 4 2 3 , 6 6 2 , 6 7
 3 , 4 , 5 , 6 8 1 , 2
 , 3 , 7 , 8 , 20 1 ,
 3 • 4 , 21 3 , 22 , 24 1 , 29
 2 , 30 3 • 4 , 30 2 4 , 30 3 2 • 3 , 30 5
 , 30 6 1 • 2 , 30 7 , 30 10, 35 1
 , 2 , 3 • 4 , 35 2 2 , 35
 3 1 • 2 36 " " " " .
 5 2 , 30 2 1 1 , 4 35 2 2 "
 " " " .
 5 4 , 6 7 2 , 6 8 1 , 9 3 , 20 1 ,
 2 , 3 , 22 , 23 , 24 2 ,
 29 2 36 " " " " .

<146>

< 25532 ,2014. 8. 6.>

2014 8 7 .

< 25716 ,2014. 11. 11.>

1 () . < >

2 3

4 ()

6 2 " 「 」 5 4 4 " " 「 」 2 17 "

.

< 26975 ,2016. 2. 11.>

1 () 2016 2 12 .

2 () 11 2014

2015 3 .

3 () 가

.

37 2 4 .

. 「 」

37 2 4 .

. 「 」

< 27960 ,2017. 3. 27.>

2017 3 30 . < >

< 28586 ,2018. 1. 16.>

1 () 2018 1 18 . < >

2 6

7 ()

1 1 2 " 「 」 " " 「 」
「 」

<24>

8

< 29194 ,2018. 9. 28.>
. < >

< 29677 ,2019. 4. 2.>

1 ()

2 ()

25 9 " " " " " .
<61>

< 30075 ,2019. 9. 10.>

1 ()

2 ()

1 1 2 " " " " " .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경력산정 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 나.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해외건설사업자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라.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 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등급	1.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이 아닌 업체·기관·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80퍼센트

	2.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 관련 분야(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3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으로서 건축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60퍼센트

비고

1. 경력의 인정기준일은 건축사보로 신고하는 전날까지로 한다.
2. 건축 관련 학과 및 건축 관련 분야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수련 영역	수련 과목	수련 항목	최소 수련일수
1. 설계	가. 기획	1) 프로그램 기획 2) 대지 및 주변 분석	365일 이상
	나. 계획설계 및 중간간설계	1) 관련 법규 검토 2) 계획설계 3) 공사비 계산(概算) 4) 구조 및 설비 계획 5) 중간설계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 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2. 공사관리	가. 공사단계별 관리	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2) 사후 설계 관리 3) 공사감리	80일 이상
	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3. 기타	가. 사무소 관리	사무소 관리	20일 이상
	나. 관련 활동	직능 관련 활동	
	계		465일 이상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4차 위 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2개월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지 12개월)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바.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8개월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비고: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법 제41조 제2항제2호		10 20 30 40	

미만인 경우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50		
나.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50	70	100
다.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3호	5 10 20 30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50 100		



[2017. 1. 17.] [00388 , 2017. 1. 17.,]

() 044 - 201 - 3776

1 () 「 」 「 」

[2012.5.30]

2 () 「 」 (" ") 2 3 " . < 2013.3.23 >

- 1.
- 2.
- 3.

[2012.5.30]

[3 , 2 3 <2012.5.30 >]

3 () 7 2 가 1 31 (

" ") . < 2016.2.11 >

- 1.
- 가. 13
- . 가

. ()

2. ()

3. (3.5cm x 4.5cm) 1

4. (. .)

1 가 2 2

2 3

, 4 . <

2016.2.11 >

5

. < 2016.2.11 >

1. : 가

2.

가. (. .)
가

. 36

6

(3.5cm x 4.5cm) 1

. <

2016.2.11 >

<2016.2.11 >

[2012.5.30]

[2 , 3 2 <2012.5.30 >]

4 <2000.5.22 >

5 () 「 」 (" ")
5 4 7 , (" ")

) 8 . 가 가 가 가 가 가
1 . 가 가 가 가 가 가

[2012.5.30]

5 2 <2012.5.30 >

6 () 가
9

. < 2013.3.23 >

1

. < 2013.3.23 >

[2012.5.30]

6 2() 13 3

(.) 10

() . <

2016.2.11 >

1.

2. (. . 가)

3. (3.5cm x 4.5cm) 2

1

11

12

3

13

()

[2012.5.30]

6 3(.)

6 7 2

14

6 7 3

1

11

6 7 4

15

[2012.5.30]

7 ()

6 8 1

16

[2012.5.30]

7 2

<1995.10.17>

8 ()

9 3

[2012.5.30]

9

<2012.5.30>

10 ()

17 3

10

. < 2013.3.23, 2016.2.11 >

1

. < 2013.3.23 >

1.

(過誤納)

:

2.

:

3.

:

4.

20

:

100 60

5.

19

10

:

100

50

- 1. 7 2 3 2 4
: 2
- 2. 6 1 : 2
- 3. 13 3 : 10
- 4. 18 1 (10756)
6 1 : 20
- 5. 18 5 : 10
- 6. 23 1
- 가. 15 : 2
- . 17 1 : 2
- 7. 23 3

- 가. 12 2 3 : 2
- . 12 2 4 : 2
- 8. 23 8
- 가. 16 3
- : 2
- . 17 1
- : 2
- 3 가 35 1 . .
- (" . ")

[2012.5.30]

10 2() 20 1

20 1 2 20 3 17 , 20 1 3

() 19

[2012.5.30]

10 3() 20 3 "

" 5 180 5 .

< 2013.3.23 >

[2012.5.30]

11 () 19 2 1

21

22

1. .

2. .

3.

4.

5.

1

. < 2014.12.29 >

1. <2014.12.29 >

2. <2014.12.29 >

1

23

24

.

가 19 2 2

25

26

27

,

28

.

4

(實費)

. < 2013.3.23 >

[2012.5.30]

12

[12 24 <2012.5.30 >]

12 2() 가 (

"

"

) 23 3

29

. < 2013.3.23, 2016.2.11 >

1. ()

가.

가

(

가

)

가

가

()

「 가 가 가 (Apostille)

2. () (3.5cm x 4.5cm) 2

1 「 」 36 1 (

가)

(. <

2013.3.23, 2017.1.17>

1 30

, 31

. < 2013.3.23>

가

32

(3.5cm x 4.5cm) 1

. < 2013.3.23, 2016.2.11>

4

. < 2013.3.23>

1

33

. < 2013.3.23>

3

가 가

가

가 가

[2012.5.30]

13

(

)

22

34

[2012.5.30]

14

(

)

23

"

"

. < 2013.3.23>

1. 가 10
 2. 가 가 .
 [2012.5.30]
 [22 3 <2012.5.30>]

15 () 24 2
 35 , 36 .
 [2012.5.30]
 [16 , 15 16 <2012.5.30>]

15 2 <2011.1.17>

16 () 23 8 2 4
 가
 15 37 ()
 .

1.
 2.
 1 가
 15 38 ()
 .

. 1
 39 ()

23 8 2 " "
 . < 2013.3.23 >

1. (發電)

2.

3. (驛舍)

4. . .

5. 1 4

23 8 4 " 「 」

1 14 ()

< 2013.3.23 >

[2012.5.30]

[15 , 16 15 <2012.5.30 >]

17 ()

()

40

[(

)]

1

[2012.5.30]

18 <1995.10.17 >

18 2 <1982.8.24 >

19 () 29 2

.

41

.

[2012.5.30]

20 <2000.5.22 >

21 <1996.1.18 >

22 <2000.5.22 >

22 2() .

1. 23 1

2. 27

,

3. 28 1 2

4. 29

1

.

.

[2012.5.30]

22 3

[22 3 14 <2012.5.30 >]

23 () 11 28

1

7

42

()

.

1 ()

[2012.5.30]

24 () 30 2 43

[2012.5.30]

[12 <2012.5.30>]

25 <2012.5.30>

25 2() 35 2

. < 2013.3.23 >

[2012.5.30]

26 () 36

1

3 31

. <

2013.3.23 >

1

. <

2013.3.23 >

1.

2.

3.

4.

1

. <

2013.3.23 >

1. ()

2.

3.

[2012.5.30]

< 216 ,1978. 12. 14.>

1 ()

2 () 8,069 (" ") 2 11 <% : 11%>

- 1. 2. 3.

1 31 <% : 31%>, 32 <% : 32%> 33 <% : 33%> 4 26 <% : 26%> 22

3 () 2 2 2

< 253 ,1979. 11. 21.>

< 261 ,1980. 3. 5.>

()

() 216 3

< 267 ,1980. 7. 15.>

1 () 2 (2) 9,878 (") 2 7

.< 1989.7.24>

4

.< 2000.5.22 >

()

()

3 () 3
13 <% : 13% >

1.

2.

1 23 2
24 <% : 24% >

< 302 ,1981. 7. 24.>

< 336 ,1982. 8. 24.>

< 389 ,1985. 7. 12.>

()

() 16 2
4 3 1

4 1985 12 31

() 1 <% : 1%>
1987 12 31 1
3 , 2

(2) 2 3,242
2
7 (1985 12 31 7 2) <% :
7%>

< 441 ,1988. 10. 14.>

< 451 ,1989. 7. 24.>

()
() 3 1 4
3

< 485 ,1991. 5. 30.>

< 504 ,1992. 6. 1.>

1 () 1992 6 1
2 4
5 ()
18 1
25 3 " " 4 2
27 2 " " " "

< 509 ,1992. 6. 25.>

.

< 560 ,1994. 8. 13.>

.

< 16 ,1995. 5. 26.>

.

< 35 ,1995. 10. 17.>

. , 4 • 5 2 • 6 • 12 2 • [1]

[2] 1996 1 1 .

< 46 ,1996. 1. 18.>

1 () .

2

3 () .

3

3 () 2 3 "

"

1.

2.

3.

17 2 " 6 2 " " 6 3 "

21

24 1 " " " "

< 61 ,1996. 4. 13.>

< 236 ,2000. 5. 22.>

267 , 15 2 4 2000 7 1 2 3 11 2001 1 1

< 310 ,2002. 4. 4.>

() () 10 2 7

< 345 ,2002. 12. 31.>

1 () 2003 1 1
2 3
4 ()

1 2

" " "

5

< 368 ,2003. 7. 25.>

1

< 411 ,2004. 11. 29.>

< 458 ,2005. 7. 18.>

< 551 ,2007. 3. 19.>

.

< 594 ,2007. 12. 13.>

.

< 4 ,2008. 3. 14.>

.

< 162 ,2009. 8. 31.>

.

< 326 ,2011. 1. 17.>

2011 1 24 .

< 349 ,2011. 4. 7.>

.

< 470 ,2012. 5. 30.>

1 () 2012 5 31 .

2 () 10 2

3 () 11 2

4 () 12 2 1 1

5 () (10756

) 2 2 3 1 .

경력산정 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총전의 규정에 따른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 나.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다.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라.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마.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대학원에서 건축 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 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등급	1.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업체·기관·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 관련 분야(도시계획·조경·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80퍼센트

	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4. 건축 관련 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 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3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60퍼센트
비 고	1. 경력의 인정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6 () (10756) 3 1
 16 .
 7 () (10756) 1 5 2019 12
 31 . < 2016.2.11 >
 1. : 2
 1
 2. : 7 44
 3. : 8
 1
 4. : 9
 2
 5.
 가. : 3 5
 . : 10 2 4
 8 () 3242
 2 44
 .
 3074 5 9183
 2 2 45
 , 9183 3

46

< 1 ,2013. 3. 23.>

1 () . < >
2 5
6 ()

2 , 10 3, 14 , 16 4
5 " " " " .
6 1 • 2 , 10 1 , 2 , 2 , 11
5 , 12 2 1 , 2 , 3 6 ,
25 2 26 1 , 2 4 , 3 3 , 8 ,
9 , 29 , 31 33 , 45
46 " " " " .
8 45 "



" "



"

9 , 41 46
" " " " .

<16> <126>

< 157 ,2014. 12. 29.>

< 285 ,2016. 2. 11.>

2016 2 12

[별표] <개정 2012.5.30>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제8조 관련)

과 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대지계획	배치계획 대지 조닝 (zoning)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실 기
건축설계 1	평면설계	
건축설계 2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11.>

건축사보 명부

신고번호		신고일자		
증명사진 (3.5cm × 4.5c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격사항	<input type="checkbox"/> 실무수련자		<input type="checkbox"/> 국가기술자격취득자	
	<input type="checkbox"/> 학력 및 경력자		<input type="checkbox"/>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자격명 (학교명)	신고/자격/합격 번호 (학과/전공명)	승인/합격일 (졸업/학위취득일)	
근무처 경력	근무처명	신고번호	근무기간	비고
행정처분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일	처분권자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11.>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신고일자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격사항	<input type="checkbox"/> 실무수련자 <input type="checkbox"/> 국가기술자격취득자	
	<input type="checkbox"/> 학력 및 경력자 <input type="checkbox"/>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자격명 (학교명)	신고/자격/합격 번호 (학과/전공명)

근무처	근무처명		개설신고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위 사람은 「건축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보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직인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 사항	성명	변경 전		변경 후	
	종전 사무소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입사일		퇴사일	
	근무처 현재 사무소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입사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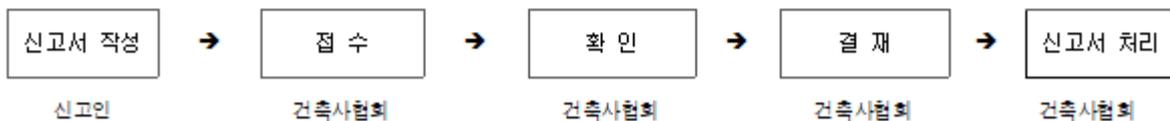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자출용품)]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입사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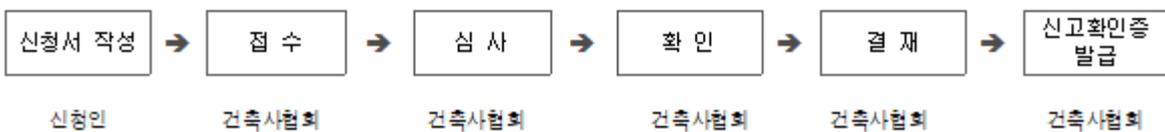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2천원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 [백상지 80g/㎡(자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1.>

(앞 쪽)

<h2 style="margin: 0;">건축사 명부</h2>	증명사진 (3.5cm×4.5cm)
------------------------------------	-----------------------

건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학교 과 년 (졸업·수료)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제 호	

근무처	사무소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개설신고번호		
	소재지		

그 밖의 자격	자 격 명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자격 취득 이전의 실무 경력 또는 연구 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직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위 쪽)

포 상

포상일	포상 내용	시행처

행정 처 분 사 항

자 격 취 소				개 설 신 고 효 력 상 실			
취소일	취소 근거	처분권자	기록자(인)	효력상실일	효력상실 근거	처분권자	기록자(인)

업 무 정 지

처분일	정지기간	처분 누계	기록자(인)	처분일	정지기간	처분 누계	기록자(인)

제 호

건축사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 취득일: 년 월 일



「건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건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격번호	제 호	자격 취득일	
근무처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대 표 자		신고 구분	
			[] 개인 [] 법인	
	소 재 지			
(전화번호:)				
재발급 사 유 <small>(구체적으로 기재)</small>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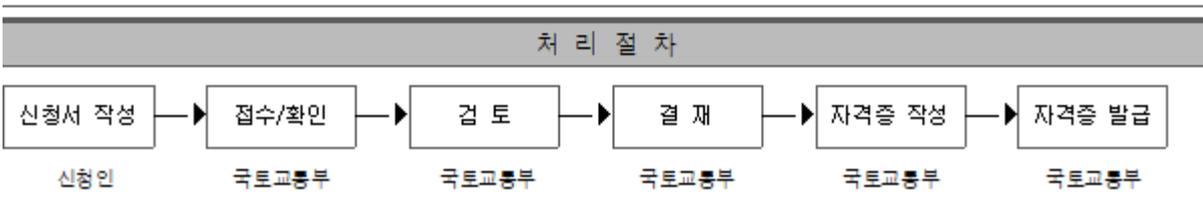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2천원
------	-----	------------

수입인자(2천원) 붙이는 곳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실무수련 []신고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증명사진 (3.5cm×4.5c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실무수련 구분	[]신규 []변경	군복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최종 학력	학력 구분	[] 졸업 [] 수료 [] 이수()학기		
	학 교 명	학과(전공)		
	취득 학위	졸업 연월일	년 월 일	
실 무 수 련 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개설신고 번호		
	감독건축사	수련기간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건축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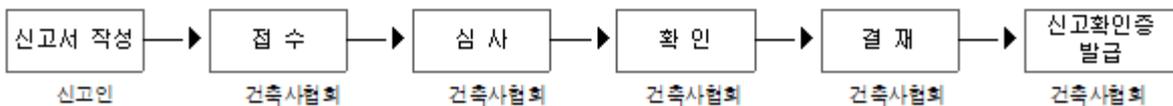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학 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중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3. 증명사진(3.5cm×4.5cm) 2장	수수료 10만원 변경신고 시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최종 학력의 학력 구분란에 이수학기를 적습니다.
2.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의 전자우편란에는 건축사사무소 대표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3. 군복무기간란은 입대일과 제대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실무수련자 명부

신고번호:

증명사진 (3.5cm×4.5c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군복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 력	학력 구분 [] 졸업 [] 수료 [] 이수()학기	
	학 교 명	학과(전공)
	취득 학위	졸업 연월일 년 월 일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수련기간
----------------	------	------

실 무 수 련 이 수 일 (누 계)

수련 영역	수련 과목	수련 항목	수련 일	최소 수련일수
설 계	1. 기획	1-1 프로그램 기획		365일 이상
		1-2 대지 및 주변 분석		
	2.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2-1 관련 법규 검토		
		2-2 계획설계		
		2-3 공사비 개산(概算)		
		2-4 구조 및 설비 계획		
		2-5 중간설계		
	3. 실시설계	3-1 실시설계		
		3-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3-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소 계				
공 사 관 리	4. 공사단계별 관리	4-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80일 이상
		4-2 사후 설계 관리		
		4-3 공사감리		
	5. 프로젝트 관리	5-1 프로젝트 관리		
소 계				
기 타	6. 사무소 관리	6-1 사무소 관리		20일 이상
	7. 관련 활동	7-1 직능 관련 활동		
	소 계			
합 계				465일 이상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5.30>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

신고번호	전 수 면 일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대학(원)	학과(전공)	졸업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2.11.>

제 호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변경신고확인증

실무수련신고번호:

증명사진 (3.5cm × 4.5c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 구분	[] 신 규 [] 변 경
-------	-----------------

최종 학력	학력 구분 [] 졸업 [] 수료 [] 이수()학기	
	학 교 명	학과(전공)
	취득 학위	졸업일 년 월 일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개설 신고번호
	감독건축사	전화번호
	수련기간	

「건축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신고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결용품)]

실무수련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	-----	------	---------

실무수련자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실무수련 신고번호	신고일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감독건축사	수련기간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참 여 사 업 별 신 고 사 항

사 업 명			
총사업기간		구 분	[] 완료 [] 진행
수련 영역	수련 과목	수련 항목	참 여 기 간
설 계	1. 기획	1-1 프로그램 기획	
		1-2 대지 및 주변 분석	
	2.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2-1 관련 법규 검토	
		2-2 계획설계	
		2-3 공사비 개산(概算)	
		2-4 구조 및 설비 계획	
		2-5 중간설계	
3. 실시설계	3-1 실시설계		
	3-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3-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공 사 관 리	4. 공사단계별 관리	4-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4-2 사후 설계 관리	
		4-3 공사감리	
	5. 프로젝트 관리	5-1 프로젝트 관리	
기 타	6. 사무소 관리	6-1 사무소 관리	
	7. 관련 활동	7-1 직능 관련 활동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무수련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감독 건축사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 5. 30>

제 호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성 명:

생 년 월 일:

실무수련 신고번호:

위 사람은 「건축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제4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특급) 120g/㎡]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증명사진 (3.5cm×4.5cm)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국적을 적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휴대전화: - -)
학력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응시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응시과목	[] 대지계획 [] 건축설계1 [] 건축설계2			
위와 같이		[] 건축사 자격시험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응시번호		접수번호		

	(절)	(취)	(선)
응시번호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표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증명사진 3.5cm×4.5cm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응시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응시과목	[] 대지계획 [] 건축설계1 [] 건축설계2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 자격은 시험 전날까지 갖추어야 하며,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2.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3.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를 포함합니다)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진 1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를 포함합니다)을 소지하고 시험 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4. 답안지, 답안 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갈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절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5. 시험장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 시작 신호와 시험 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무단 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6. 일반 계산기가 아닌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반드시 리셋을 한 후 사용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7.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절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8.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며,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건축사 []자 격 등 록 신청서

[]자격 갱신등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근 무 처	근무처명	구 분 []개인 []법인	
	개설신고번호	신 고 일	
	소재지		
	전화	전자우편	
구 분	<input type="checkbox"/> 건축사 자격등록 <input type="checkbox"/>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건축사법 시행령」 제 20조제1항 건축사 자격등록
 「건축사법 시행령」 제 20조제3항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에 따라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건축사 자격등록 1.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사 윤리선언서 3.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건축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나. 「건축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다. 「건축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수수료 20만원
	<input type="checkbox"/>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10만원



210mm×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건축사 윤리선언서

1.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3.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4.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5.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입업무와 지식 재산을 존중한다.
7. 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8.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절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책상지(특급) 120g/㎡]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5.30>

제 호

실무교육 이수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위 사람은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일 ○○○○년 ○○월 ○○일부터 ○○○시간의 건축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특급) 120g/㎡]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5.30>

제 호

건축사 자격등록증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유효기간:

위 사람은 「건축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특급) 120g/㎡]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제출자	건축사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등록번호)	()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사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설계 개요	용역명				용역금액	
	대지 위치				건축주 (발주자)	()
	허가번호 (허가일)	()	대지 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 폐 율	%	용적률	%
	용 도		건축 구분		층 수	지하 지상
	구 조		설계기간	~	공동도급 지분비율	%
	그 밖의 사항					
공동도급	건축사명	자격(등록)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지분비율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무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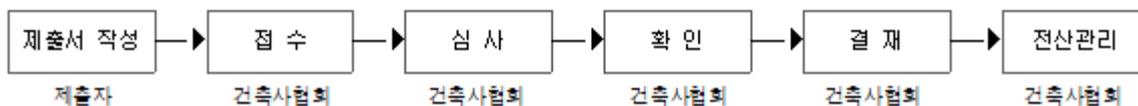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사본
------	---------------------

작성 방법

설계 개요의 "그 밖의 사항"란에는 설계변경, 용역수행자 변경 등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제출자	건축사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등록번호)	()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사무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계 개요	용역명			용역금액	
	대지 위치			건축주 (발주자)	()
	착공일		사용승인일	연면적	m ²
	용도		층 수	지하 지상	구 조
	감리기간	~		공동도급 지분비율	%
공동도급	건축사명	자격(등록)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지분비율
					%
					%
					%

「건축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업무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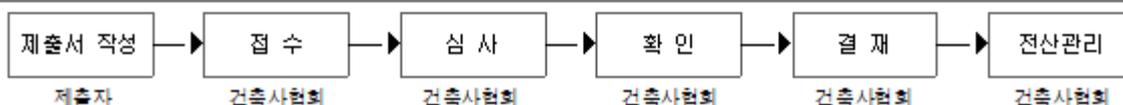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사본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 5. 30>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일련번호	건축사	자격번호	개설신고번호	건축주	대지 위치	
	용도	층수(지하/지상)	수행기간	연면적	구조	허가일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

일련번호	건축사	자격번호	개설신고번호	건축주	대지 위치
	용도	층수(지하/지상)	감리기간	연면적	구조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건축사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사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구분	[] 설계업무 실적		[] 공사감리업무 실적	
신청 부수				
신청 내용				
신청 사유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 실적 증명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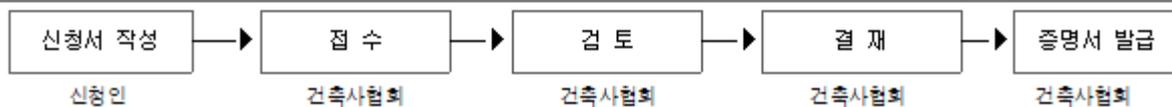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실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작성 방법

1. 발급번호란은 건축사협회에서 적습니다.
2. 신청 내용란에는 발급받으려는 실적의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설계자	건축사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등록번호) ()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사무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업무 실적 증명 내용(총 건)

용역명				건축주 (발주자)	()	
대지 위치				용역금액		
허가번호 (허가일)	()		설계용역 수행기간			
용역 개요	용 도		연면적	m ²	총 수	지하 지상
	건축 구분		구조		공동도급 지분비율	%
	그 밖의 사항					
용역명				건축주 (발주자)	()	
대지 위치				용역금액		
허가번호 (허가일)	()		설계용역 수행기간			
용역 개요	용 도		연면적	m ²	총 수	지하 지상
	건축 구분		구조		공동도급 지분비율	%
	그 밖의 사항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무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직인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

감리자	건축사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등록번호) ()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사무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업무 실적 증명 내용(총 건)

대지 위치						
용역명			건축주 (발주자)	()	용역금액	
착공일		사용승인일		감리용역 수행기간		
용역 개요	용 도		연면적	m ²	층 수	지하 지상
	건축 구분		구조		공동도급 지분비율	%
	그 밖의 사항					
대지 위치						
용역명			건축주 (발주자)	()	용역금액	
착공일		사용승인일		감리용역 수행기간		
용역 개요	용 도		연면적	m ²	층 수	지하 지상
	건축 구분		구조		공동도급 지분비율	%
	그 밖의 사항					

「건축사법」 제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제 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업무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직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자격번호(면허번호)	국 적
공동수입 사무소	사무소명	구 분 [] 개인 []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건축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cm×4.5cm) 2장	수수로 2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확인이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2.11.>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			증명사진 (3.5cm×4.5cm)
신고인	성 명	생년 월일	
	자격번호(면허번호)	국 적	
공동수입 사무소	사무소명	구 분	
	소재지	[] 개인	[] 법인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항목	변경 내용	기록자(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2.11.>

제 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증명사진 (3.5cm × 4.5cm)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자격번호(면허번호)
	사무소명	구 분 [] 개인 [] 법인
공동수입 사무소	사무소명	구 분 [] 개인 []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위 사람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 (보존용지(1급) 120g/㎡)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자격번호(면허번호)	신고번호	신고일
공동수입 사무소	사무소명	구 분 [] 개인 []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재발급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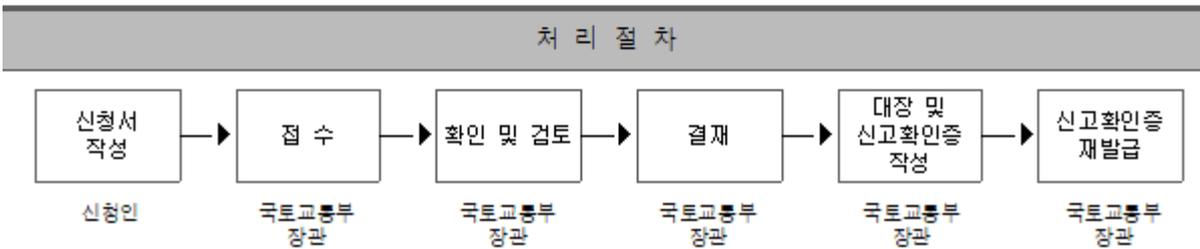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2천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국적
	자격번호(면허번호)	신고번호	신고일
변경 사항 (구체적 으로 기재)	변경 항목	변경 내용	변경 일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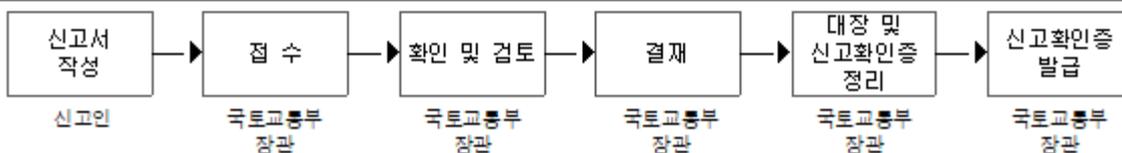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5일
신고인	건축사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사무소	사무소명	구 분	
	소재지	[] 개인 [] 법인 (전화번호))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수수료 2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입증지(2만원) 붙이는 곳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앞 쪽)

제 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무소명: ([]개인 []법인)

소재지:

건축사명: (자격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위 사무소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
[] 건설업자 소속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건축사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사무소명	신고번호(등록번호)	
	대 표 자	입 사 일	
	소 재 지		

[]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2호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4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수수료 2만원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
 건설업자 소속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건축사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사무처명	신고번호(등록번호)		
	대 표 자	입 사 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유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2호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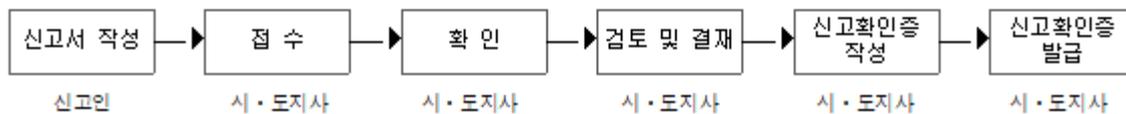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퇴사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앞 쪽)

제 호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상호 또는 명칭		
소재지		
신고인 (건축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p>[]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위 건축사는</p> <p>[]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건설업자</p> <p>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p>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80px; height: 80px;"> <p style="color: orange; font-size: 1.2em;">직인</p> </div> </div>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접수번호	접 수 일	실명확인	처리 3일 기간
------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근무처	사무소명	신고번호
	대 표 자	신고 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엔지니어링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건설업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재발급 사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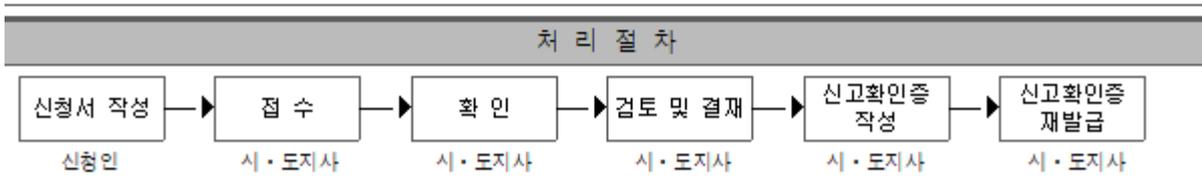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천원
------	----	------------

수입증지(2천원) 붙이는 곳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설신고사항 변경
건축사사무소 휴업 신고서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일
------	-----	------	---------

신고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제 호
	대표자	신고 구분 [] 개인 []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내용	변경일
신고사항			

「건축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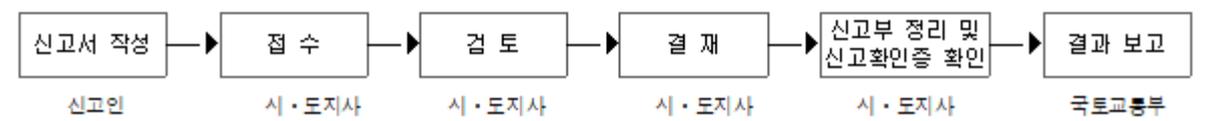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폐업신고 시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건축사사무소

우편번호/주소 /전화 /팩스/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발신 ①

제목 수탁(계약) 업무 현황 보고

건축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현황을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23조제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건축사사무소 현황

- 가. 사무소명: (신고번호:)
나. 소재지: (전화번호:)
다. 대표자: (자격번호:)
라. 처분종류: [] 자격취소 [] 개설신고 효력상실 [] 업무정지
마. 처분기간:

2. 수탁업무 내용

일련번호	계약일	건물명	건물 위치	건축주	계약 내용	진도	비고

붙임: 설계 계약서 및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각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2.11.>

(앞 쪽)

제 호

검사공무원증

사 진
(3.5cm×4.5cm)
(무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검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공무원은 「건축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지
특별자치도지사

시
지사

시장
시장

직인

1. 이 증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

※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국적을 적습니다.

증명사진
(3.5cm×4.5cm)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 - -) (휴대전화: - - -)		
학 력	학 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위와 같이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응시번호		접수번호	
------	--	------	--

..... (절) (취) (선)

[]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 **응시표**

증명사진
3.5cm×4.5cm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2장을 소지하고 응시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오른쪽 위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중 객관식 답안의 작성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컴퓨터 채점 시 무효 처리됩니다.
5.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면허증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합격증 번호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근무처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대 표 자	신고 구분 [] 개인 [] 법인		
	소 재 지	(전화번호:)		

「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83호) 부칙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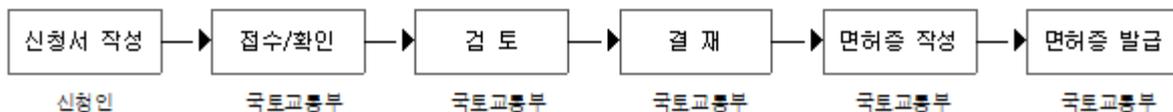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없음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2012. 9. 21.] [2012 - 631 , 2012. 9. 24.,]

()044 - 201 - 3777

1 () 「 」 30 2 30

2 () 가 「 」 (" ") 30 2

3 ()

1. 가

2. 31 (" ")

3. 「 」

4. 「 」

5. 가

4 () 「 」 (" "

") 36

1

(.) .

2

")

1. , ,

2. , , ,

3.

4. 가 , 2 (明記)

3

(" ") ,

가 , 1

5 ()

1. : 가 30 3 1

2. : . .

3. , , ,
1 1

6 ()

1. : 가

2. : 가

7 ()

20

1 1

8 () 「 」 26

()

9 ()

7 1

1. .

2.

3.

4. 가

1 1

10 () 5 1 3

2

1 ,

11 ()

3

15

4

()

12 (

•)

10

11

5

13 (

)

, 4

1. 3 5

2. 4 4

3. 9 1 4

4. 10 2

5. 14 2

6.

1

13 2(

)

1

10

(" ")

1.

2. 「 」 2

가

(職

)

3. 「

」 2

(1

2

가

)

4.

1

1

13 3() , .

13 4()

1.

2. , ,

3.

14 () 30 3
(" ")

15 () 「 . 」 (248)

2015 9 20 .

< 2012 - 631 ,2012. 9. 24.>

1 () 2012 9 21 .

2 () (10756
) 6 가

7 1 .

[별표 1]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별 인정기준 (제5조 관련)

교육종류	이수기준	인정사항	인정시간	
윤리교육	5시간	· 집합교육	수강한 시간	
전문교육	40시간 이상	· 건축계획에 관한 교육 · 건축정책 및 법령에 관한 교육 · 건축설계에 관한 교육(건축물디자인, 친환경 건축 설계, 에너지절약 설계, 지능형 건축물 설계, BIM, 유니버설 디자인 등) · 건축기준에 관한 교육(구조, 시공, 설비, 피난 등) · 건축공사·설계 감리에 관한 교육 ·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회계, 세무, 경영 등) · 해외진출등 사례연구 ·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한 경우	수강한 시간	
자기계발	15시간 이하	건축관련 국제행사	· 국제 건축관련 회의 참석 · 건축관련 국제세미나, 강연회등 참석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에 따른 "1년" 동안 최대 5시간
		건축관련 국내행사	· 건축관련 국내세미나, 강연회, 건축사총회, 건축사대회 등 참석	
		건축관련 사회봉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한 건축 관련 사회봉사활동 참여	
		건축관련 위원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안건 심의·심사	
		건축관련 저작	· 전문서적 저술, 전문서적 개정판 및 편저 · 전문자료(해설)집 저술	
		건축관련 강의	· 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직 강의	
		건축관련 번역	· 전문서적 번역 및 편역	
		건축관련 논문발표	· 국내외 학술지, 대학 논문집, 정기간행물 등	
		건축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 연구용역 보고서	
		건축관련 학술회의 활동	· 국제 및 국내 컨벤션, 심포지엄 등에서 강연, 발표, 토론 등	
		건축관련 기고	· 신문·잡지 등의 칼럼, 사설, 기고 등	
기타	· 운영위원회에서 자기계발로 인정한 경우			

※ 이수기준 시간은 5년 60시간 기준임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사 실무교육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	-----	------	------	----

※ 위 칸은 적지 않습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연기사유	<input type="checkbox"/> 해외연수·출장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input type="checkbox"/>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input type="checkbox"/> 군복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기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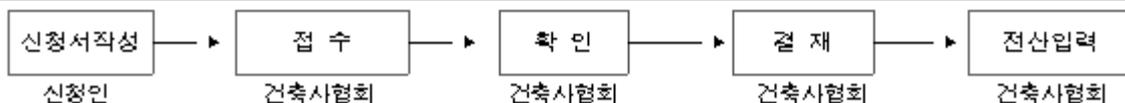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기 재 요 령

◦ 연기사유 : 해당 □란에 √표시를 한 후, 연기사유를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심명확인	처리기간	7일
------	-----	------	------	----

※ 위 칸은 적지 않습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자기 계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input type="checkbox"/> 국내행사 <input type="checkbox"/> 건축관련 사회봉사 <input type="checkbox"/> 번역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심의·심사 <input type="checkbox"/> 저작 <input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건축관련 기고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학술회의 활동 <input type="checkbox"/> 기 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라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축시험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 자기계발 항목의 관련자료 또는 해당기관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	--------------------------------	--------

기 재 요 령

○ 자기계발 : 해당 □란에 √표시한 후, 자기계발 내용을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 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아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1조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실무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이수시간
	~	

년 월 일

교육기관의장 직인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

품)]

[별지 제4호 서식]

교 육 기 관 명

수신자: 건축시험회장

(경유)

제 목: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결과

1. 실무교육 실시내용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이수자 명
	기간	시간	
	~		

2. 교육이수자 명단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 일	자격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이수 시간	수료 번호	비 고
					시작일시	종료일시			

※ 첨부 : 교육이수자 명단(파일) 1부.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1쪽)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현황부

등록번호 :

인 적 사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근 무 처	근무처명		개설신고 번호		
	소 지 지				
	전 화		F A X		전자우편

실 무 교 육 이 수 시 간

※ 등록(갱신) 시점부터 5년간의 누계

구분	교육 과정	교육 기간	이수시간	기준이수시간
윤리				5시간
	소 계			
전문				40시간 이상
	소 계			
자기 계발				15시간 이하
	소 계			
합 계				60시간

210mm×297mm (보존용지(1급) 120g/m²)



가

[2012. 8. 22.] [2012 - 553 , 2012. 8. 22.,]

()044 - 201 - 3776

1

1 () (" ") 19 3

가

2 () 19 3 1 (" ")가 5

3 ()

1. , , ,

2. , ,가

3. < >

1

가 , 가 .

4 () 가

2

5 () 1

1.

가.

1)

2)

3)

.

.

1)

2)

3) , • ,

4) 3D

5)

6) VE(Value Engineering)

7) Fast track

8) (10m)

9)

10)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12) 65

13) 65 2 (IBS)

14) 66 2

2.

가. 19 5

. 19 5

. ,

.

1)

2) 가

3) 2 6

3. 26 (CM)

4. , ,

• •

• • •

5. 1 4

가.

.
. .
. (Master Plan)
. .
. (Life Cycle Cost Analysis)
. .
. 가

6 ()

5 1 가 " "

5 1

1. "

가. "

가

. "

. "

5 1

108

가

5 1

가

가

가 3

2

.

.

(Life Cycle Cost Analysis)

(Master Plan)

가

가 3

가

가

1

1. 11 가 14 가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 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0	25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50	60
계	100	120

2. 가 , ,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5	30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45	55
계	100	120

7 () 5 2

5 2 19 5 1

3 가

8 (가) 가

1. 가 가 가 가

2. 가 가 가

3. 가가 가가 가 1

가 가

9 (가) 가

1. 가 19 가 ,
가

2.

10 () 가

3

가

4

• 가 ,

2 .

11 (가) 5 1 가 가 1

2

가 3%

8%

.

5 1

가

4

. ,

1. (2 1 1)
가 2 가

2

가

2. 2 가

$$\text{가} = A(1 + 1/2 + 1/3 + \dots + 1/n)$$

A : 1 가

n :

3. 1 2 가 3 가 2 ,
가

4. 2 가 1.5

3

3

5 1

가 18

가

5 1

가

1. 5 1 1) 2) 가 2 가 1.5

2. 5 1 3) 11) 가 18 가

3. 5 1 12) 가 2 가
 가 .
 가. : 가 9.5%
 . : 가 9%
 . : 가 8.5%
 . : 가 8%

4. 5 1 13) 가 2 가
 가 .
 가. 1 : 가 7%
 . 2 : 가 6.5%
 . 3 : 가 6%
 . 4 : 가 5.5%
 . 5 : 가 5%

5. 5 1 14) 가 2 가
 가 .
 가. 1 : 가 7.5%
 . 2 : 가 7%
 . 3 : 가 6.5%
 . 4 : 가 6%
 . 5 : 가 5.5%

6. 5 1 12) 14)
 2 가 가

가 가 = A + 1/2 B + 1/3 C

A : , , 가
 B : , , 가
 C : , , 가

가) 가 18 가

12 (가) 6 5
 가 .

13 (가) 가
 11 가

1. 가 , , , ,

가 20% .

2.

3. 가

4. 가 가 가

14 (가) 5 2 가 가

5

5 2 가 18 가

15 (가) 5 3 5

가 18 가

16 () 4 5 가

가

$$Y = y1 - \frac{(X-x2)(y1-y2)}{x1-x2}$$

X : x1 : x2 :

Y : y1 : y2 :

17 (5,000) 5,000

$$\text{요율} = \frac{\text{평균급여액} \times \text{소요인원}(1+\text{제비율})}{\text{공사비}}$$

· : · , , ,

· : 18

18 (가 가) 가 가

가 = (+) + +

1. (+)

가. "

가

, 가

12

가

가

. "

"

(,)

(

)

가

, ,

가

가

(

,

)

2. " "

,

,

120%

3. " "

가 .

가

20%

40%

19 (

) 「

.

」 (

248)

2015 8 21

< 2012 - 553 ,2012. 8. 22.>

1 ()

[별표 1]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I	II	III
규 모 검 토 서 (공 간 계 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각층 평면도		○	○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현 장 조 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	○
설 계 지 침 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공간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기 존 유 사 건 물 조 사 비 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	

※대가의 구분 : I - 3%, II - 5%, III - 8%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선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한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도면	배치도	○	○	○
		대지 총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총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 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총·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
		무대·조명					○
		전시·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 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계약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계약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계약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계약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 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 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펌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펌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계약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계약 공사비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전력 계통도		○	○
		조명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	○
	평면도	조명 평면도			○
		소방 평면도	○	○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총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 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 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 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바.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계약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계약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계약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
	식재 평면도			○	○
	단면도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지방서		○	○	○	
	설계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 ~ 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 ~ 1/50	○	○	○
		승강기, 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 ~ 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 ~ 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 ~ 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 ~ 1/50	○	○	○	
		주출입구부분 평, 입, 단면상세도	1/5 ~ 1/50			○	
		부출입구부분 평, 입, 단면상세도	1/5 ~ 1/50			○	
		샷다 상세도	1/5 ~ 1/50			○	
		핏트 상세도	1/5 ~ 1/50			○	
		발코니 상세도	1/5 ~ 1/50		○	○	
		출입구 상세도	1/5 ~ 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 ~ 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 ~ 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 ~ 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 ~ 1/50		○	○	
		창호 평면도	1/5 ~ 1/50		○	○	
		창호 상세도	1/5 ~ 1/50			○	
		창호 입면도	1/5 ~ 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 ~ 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 ~ 1/50			○	
		천정 상세도	1/5 ~ 1/50			○	
		부분 상세도	1/5 ~ 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 ~ 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 ~ 1/50			○	
		로비 전개도	1/5 ~ 1/50			○	
		주요실 전개도	1/5 ~ 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 ~ 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 ~ 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 ~ 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 ~ 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 ~ 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 ~ 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 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 ~ 1/200	○	○	○
	구조 단면도		1/30 ~ 1/200	○	○	○
	기초일람표		1/30 ~ 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 ~ 1/100		○	○
	기둥 일람표		1/30 ~ 1/100	○	○	○
	보 일람표		1/30 ~ 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 ~ 1/100	○	○	○
	옹벽 일람표		1/30 ~ 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 ~ 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 ~ 1/100	○	○	○
	주심도		1/30 ~ 1/200	○	○	○
상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 ~ 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 ~ 1/50	○	○	○
		코아 상세도	1/30 ~ 1/50	○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 ~ 1/50	○	○	○
		보접합 상세도	1/5 ~ 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 ~ 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 ~ 1/50	○	○	○
		STUD BOLT 설치도	1/5 ~ 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 ~ 1/50	○	○	○
	잡 상세도		1/5 ~ 1/50			○
	가구도		1/5 ~ 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 ~ 1/50			○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 ~ 1/50		○
		캐노피		1/5 ~ 1/50		○
		파라펫		1/5 ~ 1/50		○
TRUSS		1/5 ~ 1/50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 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 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 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 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 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 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 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 대평면도	1/5 ~ 1/50			○
	화장실 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 ~ 1/50			○
	저수조, 고가수 조 배치 및 상 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 ~ 1/50			○
	설비용펄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 ~ 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 ~ 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 ~ 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라. 전 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각종 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파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마. 토 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 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총횡 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 단면도		1/5 ~ 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 ~ 1/50	○	○	○
	포장 상세도		1/5 ~ 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 ~ 1/100			○
	옹벽 평 단면 전개도		1/5 ~ 1/100	○	○	○
	옹벽 상세도		1/5 ~ 1/100	○	○	○
	담장 입 단면도		1/5 ~ 1/100			○
	담장 상세도		1/5 ~ 1/100			○
	방음벽 상세도		1/5 ~ 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 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 ~ 1/100			○

바. 조 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상세도	포장 평입 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탁시설 - 공장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종별	도서외양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공 사 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가

[2013. 4. 15.] [2013 - 91 , 2013. 4. 15.,]

()044 - 201 - 3567

1 () 「 」 (" ") 21 , (" ") 50 (" ") 24 1 5 「 」 (" ") 가 (" ") .

2 () 24 1 가 .

3 (가) 가 가 가

가 ±20 1 2 가 .

가 ‘ ’ () .

4 (가) 3 가

1. 가 () 7

2. 가 (), 1 「 」 5 5 2

3. 가 가

가 1 .

1 . 가 가
 5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7
 가

3

가

가 4 , 가
 0 . 가

6 (가) 가

가 가 가 가

7 () 가 가 가 「 가
 」 28 「

」 34

8 (가) 가
 () 3

가. 가

9 () 「 . 」 (248)

2015 8 20 .

< 2013 - 91 ,2013. 4. 15.>

1 () .

[별 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밑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 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1)책임기술자	(18)	
	(가)등급	4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실적	6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라)기술능력	1	-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마)업무관리능력	1	-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첨부1)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2점은 책임기술자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등급	(22)	
	(나) 경력	5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다) 실적	8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가) 등급	(8)	-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나) 경력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는 동일하게 평가)
	(다) 실적	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가) 등급	3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나) 경력	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3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4)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2) 1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0.5점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실적	[15] (7)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밀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밀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밀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밀괄입찰 (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금액	(7)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3)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은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 -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이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이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 건설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실적	[1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margin-top: 10px;"> <thead> <tr> <th>경과기간</th> <th>5년 미만</th> <th>5년 이상 10년 미만</th> <th>10년 이상 20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투자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3% 이상</th> <th>3.0% 미만 2.5% 이상</th> <th>2.5% 미만 2.0% 이상</th> <th>2.0% 미만 1.5% 이상</th> <th>1.5% 미만 1.0%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3)활용실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29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중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활용건수 (건)</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 이상</td> <td>20 미만 18 이상</td> <td>18 미만 16 이상</td> <td>16 미만 14 이상</td> <td>14 미만 12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아. 업 무 해 부 도	(1)책임기술자	(4)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등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 (단,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도 평가대상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용역으로 한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6)	

※ 비고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I. 일반사항

1.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지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첨부 1.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구 내용 (요약)						
	기업 부담 금 내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천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p>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인)</p>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기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지분율 %)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중도도급여부	중도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중등수급제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IV.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p>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 주 처					
공 사 명					

1. 「 」 28 1
- 2.
3. CM
4. 가
- 5.
6. 가 가가 「 」
7. 가 .
- 8.
- 9.
10. 가가 가
11. 가 가
12. 가
13. 가
- 14.
15. 가
16. 가
17. 가
- 18.
19. 가 가
20. 가 가 가

:
: han-gang@kakao.com
: 2019. 11. 24



가